

제57차 정기이사회 개최 계획

2019. 3.

문서번호	경영지원팀-615	선임	경영지원 팀장	본부장	대표이사		
결재일자	2019.03.28.	03/26	03/27	03/27	전결03/28		
공개여부	공개	손현정	강경남	김상헌	최경란		
방침번호	대표이사방침 제 (700)호	협 조		책임			
				03/27 정은석			

추진근거	- 제57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및 상정안건 검토 요청(경영지원팀-473,2019.3.8)		
대 내 외 협력현황	부서(단체)명	협의내용	협의결과
	디자인정책과 공기업담당관	이사회 상정 및 보고안건 사전검토	검토완료
사 업 비	4,900천원		

서울디자인재단 (경영지원팀)

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✓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✓' 표시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옴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기 타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
	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
	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의 활 용	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관 계 기 관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서울시 디자인정책과, 공기업담당관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관 련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
제57차 정기이사회 개최 계획

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와 재무회계 결산서를 승인하고, 2019년 사업계획 변경 및 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재단 운영에 반영하고자함

1. 개최개요

- 일 시 : 2019년 3월 27일(수), 16:00
- 장 소 : DDP배움터4층 아너스라운지
- 참석자 : 14명 중 12명 참석 (이사 10명, 감사 2명) 예정
- 배석자 : 재단 본부장 간사 노조위원장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공기업담당관 담당자 등
- 진행순서

순서	시 간	내 용	진행
1	16:00	이사회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	이사장
2		상정안건 보고 및 의결	이사장
3	~17:15	폐회 선언	이사장

2. 회의안건

■ 상정안건(5건)

구 분	상정안건	번호	비고
1	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승인안	제174호	시장승인
2	20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	제175호	이사회승인
3	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	제176호	시장승인
4	보수규정 개정안	제177호	시장승인
5	DDP대관규정 개정안	제178호	시장승인

■ 보고안건(3건)

1. 신임이사 임명 보고(백준상, 설은아, 최소현) 및 노동이사 선거 진행 보고
2. 내규개정 보고(5건)
 - 인사규정시행내규, 계약직운영내규, 비상용직 관리내규, 직원근무평정내규, 공무국외 출장심사내규
3. 2018년 감사 종합보고

■ 상정안건 상세 내용

① 제174호 :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처리 승인안

□ 제안이유

- 2018 회계연도 결산결과 및 잉여금 처리 안을 확정,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1) 2018 회계연도 예산 세입.세출 결산확정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예산액	결산액	차이
세입	합계	54,751,044	54,568,030	△183,014
	재단	19,806,755	20,200,383	393,628
	패션	17,424,638	17,400,051	△24,587
	DDP	17,219,651	16,667,596	△552,055
	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	300,000	300,000	-
세출	합계	54,751,044	43,855,510	△10,895,534
	재단	19,806,755	13,540,641	△6,266,114
	패션	17,424,638	15,952,542	△1,472,096
	DDP	17,219,651	14,362,327	△2,857,324
	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	300,000	-	△300,000
순세계 잉여금	합계	-	10,712,520	10,712,520
	재단	-	6,659,743	6,659,743
	패션	-	1,447,509	1,447,509
	DDP	-	2,305,268	2,305,268
	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	-	300,000	300,000

2)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처리안

※ 순세계 잉여금 10,712,520천원은 '19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함

- 전체 107억 중 63억은 '18년 12월말 상정안건 중 사업계획상에 기 편성되었으며, 나머지 44억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편성을 진행함

가) 재단 잉여금(67억): 기편성 37억 + 기본재산 적립3억 + 예비비 편성 27억

※ 기본재산 적립근거: 서울시 예산 편성 지침 중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 中

-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금액은 기본재산에 적립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

나) 패션사업 잉여금(14억): 기편성 9억 + 기본재산적립 0.2억 + 예비비 편성5억

다) DDP(자체수입 23억): 기편성 14억+추가사업비 편성 9억

- DDP의 경우 개관 이후로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시설로 잉여금 역시 100%자체 수입임. 2019년 살림터 임대 수입 또한 감소하고 있어,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운영 사업비용으로 재투입되어야 함.

단위 : 천원

구분	2018년 순세계잉여금	2019년 순세계 잉여금 배정			
		'18년 12월말 사업계획 기 배정	57차 이사회 세입예산 편성(44억)		
			사업비	기본재산적립	예비비
합계	10,712,520	6,340,385	927,462	279,054	3,165,619
재단	6,659,743	3,713,940	-	255,242	2,690,560
패션	1,447,509	948,638	-	23,812	475,059
DDP	2,305,269	1,377,807	927,462	-	-
비엔날레	300,000	300,000	-	-	-

2 제175호 : 20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

□ 제안이유

○ 201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서를 확정,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○ 201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서(재무제표) 확정

1) 2018년부터 최초로 공익법인회계기준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,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-35호)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.

2) 재무상태표 요약

(단위 : 천원)

구분	금액	비고
자산총계	23,558,616	
유동자산	16,725,444	현금성자산, 미수 채권 등
비유동자산	6,833,172	장기금융상품, 유형자산 등
부채총계	6,149,938	
유동부채	2,601,716	미지급금(서울시 반납예정) 등
비유동부채	3,548,222	임대보증금, 퇴직급여충당금
자본총계	17,408,678	
자본금	1,000	설립 기본재산
이익잉여금	17,407,678	누적 잉여금

3) 운영성과표 요약

(단위 : 천원)

구분	금액	비고
I. 사업수익	52,416,971	
이전수입	30,486,000	출연금 수입
DDP수익사업수입	12,770,742	DDP 사업 수입
기부금수입	250,595	기부금
기타수익사업수입	8,909,634	그 외 수탁사업 등
II. 사업비용	47,547,475	
디자인사업수행비용	8,363,484	재단 사업 운영
패션사업수행비용	13,155,223	패션봉제 사업 운영
DDP사업수행비용	14,117,041	DDP 운영
일반관리비용	4,333,305	일반관리비
기타사업비용	7,578,422	그 외 수탁사업 등
III. 사업이익	4,869,496	I.사업수익-II. 사업비용
IV. 사업외수익	428,084	이자수익 등
V. 사업외비용	8,059	
VI. 당기순이익	5,289,521	

③ 제176호 :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

□ 제안이유

-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 25조에 의거 2019년 예산 및 사업 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이사회 심의·의결을 얻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1) 세입세출 변동의 건

- 2019년 세입예산 증액 : 606.7억 → 645.4억(38.7억 증액)으로 변경함
 - 2018년 순세계잉여금 44억 : 2019년 세입으로 편성
 - 비엔날레 운영수입(티켓판매 등) 3억 : 신규편성
 - DDP 자체수입 8억 감소 조정 : DDP살림터 임대수입 감소로 인함
- 2019년 세출 예산 증액 : 606.7억 → 645.4억(38.7억 증액)
 - 사업비용 증가 4억(DDP시설위탁비용 1억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비용 3억), 예비비 편성(32억), 기본재산 편입(3억)

구분		예산	비고
세입 조정	합계	+3,870백만원	60,668→64,538백만원
	이월금의 증가	+4,372백만원	
	재단 이월금 증가	+2,946백만원	
	패션 이월금 증가	+499백만원	
	DDP 이월금 증가	+927백만원	
	자체 수입금액 증감	△502백만원	
	비엔날레 자체 수입 증가 DDP자체 수입 감소	+323백만원 △825백만원	· 자체 티켓 판매 수입 등 · 살림터 임대수입 감소로 인함(14억→6억)
세출 조정	합계	+3,870백만원	60,668→64,538백만원
	DDP운영관련 세출 증가	+102백만원	
	시설위탁사업 비용 증가	102백만원	· 시설위탁사 홀메나저 2명 증원(178명→180명)
	도시건축비엔날레 세출 증가	+323백만원	
	행사 홍보 비용 증가	+323백만원	· 홍보비(언론 광고 등), 행사비(포럼 등) 증액
	예비비 편성 기본재산 편입	+3,166백만원 +279백만원	· 재단 2,691백만원 패션 475백만원

2)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내역 변동의 건

○ 인건비 변동

- 2019년 1분기 재단 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용
(사업비 내 기간제 근로자 보수 → 일반관리비 정규직 인건비)

- 조정근거: 2019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

※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,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한다.

- 조정내역

감액		증액	
총계	68백만원	총계	68백만원
스마트유니버설 디자인 거점	10백만원	인건비	57백만원
거점별 패션지원센터운영	51백만원	운영경비	11백만원
소상공인판로개척 및 동대문 패션상권활성화	7백만원		

4 제177호 : 보수규정 개정안

□ 제안이유

- 『서울디자인재단 보수규정』 제8조에 의거하여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
- 『2019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통보(공기업담당관-1238, '19.01.28.)』 및 『2019년 서울형 생활임금 결정(노동정책담당관-10417, '18.10.07.)』을 반영하여 기본연봉 상·하한액을 조정하고자 함.
- 신규 임용시(실무자급) 대표이사 방침으로 운영되던 직급별 최대경력 인정 범위를 규정으로 명시하여 신규임용자의 경력환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- 『서울특별시 노동혁신 종합계획(안)』(2016.09.13.)의 “위험업무, 야간업무 등 특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해당 수당 신설 지급요구”에 따라 『보수규정 <별

표2>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(개정 2017.01.02.)』 및 『보수규정 시행내규 제 13조(특수업무수당)(개정 2017.03.16.)』을 신설하였으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의 특수업무수당 대상자가 상이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1) ‘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및 ‘19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<별표1>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및 <별표6> 경력환산기준표(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) 개정

(기준1) ‘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: 1.8%이내(호봉승급분 1.4%별도)

(기준2) ‘19년 서울형 생활임금 : 월급 2,120,932(연봉 25,451,184)

- 전문직 마급 : **하한액 11.24% 조정**(생활임금 준수)
- 전문직 다급·라급 / 일반직 5급·6급 : 차하위 직급간 **기존 연봉 구간 비율** 등을 고려하여 조정
- 그 외 : 총인건비 인상률 **1.8%로 상·하한액 일괄** 인상

※ [참고]직급별 상하한액 최종인상률

직 급		상한액 (인상률)	상한액 (기본연봉)	하한액 (기본연봉)	하한액 (인상률)
대표이사		-	시장이 결정		
일반직	1 급	1.8%	78,567	58,883	1.8%
	2 급		72,313	45,684	
	3 급		65,277	39,551	
	4 급		58,148	31,753	7.4%
	5 급		50,028	26,237	
	6 급		45,781	23,863	
전문직	가 급	1.8%	62,902	30,480	1.8%
	나 급		55,441	27,130	
	다 급		48,613	25,651	11.2%
	라 급		42,774	23,330	11.2%
	마 급		36,760	22,692	11.2%

- 2) 신규임용시 연봉결정기준과 직급별(실무자급) 최대경력 인정 범위를 명시
- 보수규정 <별표6> “경력환산기준표” 명칭을 “**연봉산정표**”로 변경 (보수규정시행내규 <별표5>경력환산 기준표와 혼란 방지)
 - 보수규정 제11조(신분변동시 연봉계산) 1호의 “경력환산기준표”를 “<별표 6> 연봉산정표 및 인사 규정시행내규 <별표5> 경력환산기준표”로 변경
 - 대표이사 방침으로 운영되던 직급별 최대경력 인정범위를 **6급(2년), 5급(4년), 4급(8년), 3급(11년)**으로 규정에 명시하고자 함.

※ 직급별 채용자격기준과 최대경력인정 비교표

직급	채용 자격기준(인사규정<별표>)	최대경력인정 범위
1급	해당분야에 15년이상 경력자	-
2급	해당분야에 12년이상 경력자	-
3급	해당분야에 9년이상 경력자	해당분야 경력 11년
4급	해당분야에 5년이상 경력자	해당분야 경력 8년
5급	해당분야에 3년이상 경력자	해당분야 경력 4년
6급	학력 및 경력 제한없음	해당분야 경력 2년

※ 타기관 신규직원 자격기준 및 보수산정 비교표

구 분	산업진흥원	복지재단	문화재단	여성가족재단
신입직원 직급	7급	7급	7급	6급
자격	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*근거: 인사규정 정규직의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	학력 및 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음 *근거: 인사규정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	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*근거: 인사규정 제7조	-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-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*근거: 인사규정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
보 수	직급 하한액 *근거: 보수규정 제20조 제1항	연봉 책정 시 관련 경력 2년까지 인정 *근거: 채용공고문 (18.10.16.)	3년까지 경력 인정 *근거: 채용공고문 (18.11.20.)	기존직원의 연봉액을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, 대표이사가 정함 *근거: 보수규정 제11조

※ [참고] 보수규정시행내규 <별표 5 경력환산기준표>

구분	적용 대상 경력	적용율	비고
제1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무원 근무경력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 근무경력 지방자치단체 투자·출연기관 근무경력 군복무 경력 	100%	
제2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근무경력 (회원경력은 제외) 상법에 의한 합명·합자·주식·유한회사 근무경력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근무경력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근무경력 외국의 국가기관, 공공기관, 법인 등 근무경력 교육연구기관, 언론기관 근무경력 일반기업체 해당 관련 분야 근무경력 	90%	
제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항 및 제2항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	85%	
제4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리랜서 근무경력 (경력은 시간환산이 증명 가능한 경우만 인정하며,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함) 	80%	

(중략)

3)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의 특수업무 수당 지급대상 일치

구분	보수규정(현행)	보수규정 시행내규(현행)
	<별표2> 부가급여 지급기준표	제13조(특수업무수당) ①항
내용	예산·결산·계약·감사·노사·보상업무·경영평가 등 실무담당 직원(팀장이하)	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보수규정 <별표 2>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에 해당하는 업무수행 및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재단 직원에 한해 지급한다.

- 법정 안전관리자에 대한 **특수업무수당의 지급기준을 보수규정에도 명시**

[보수규정 <별표2>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]

구분	지급률 또는 지급액	적용 범위
특수업무 및 기술수당 <제정 2017.01.02>	◦ 지급분야 : 예산·결산·계약·감사·노사·보상업무·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(팀장이하) 월 80,000원 (기술수당 후략)	◦ 회계, 결산, 계약, 감사, 노사, 보상업무, 경영평가 및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실무담당 직원(팀장 이하)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(기술수당 후략)

※ [참고] 타기관 특수업무수당 비교표

구분	서울문화재단	서울관광재단	세종문화회관	서울의료원
수당 명칭	특수업무수당	특정업무수당	특수업무수당 -법정선임수당	안전관리수당
규정	보수규정	보수규정	보수규정	보수규정
내용	회계직, 예산담당, 전산직, 계약담당, 시설담당, 감사, 노사, 보상업무, 경영평가 실무담당, 무대기술자격증소지자(기계,조명,음향)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	회계, 예산, 전산, 계약담당, 시설담당, 감사, 노사, 보상업무, 경영평가 실무담당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	특정업무수당: 노무, 계약, 결산, 예산, 경영평가, 감사, 법정선임수당: 시설안전(산업), 전기안전, 전기안전보조, 소방안전, 안전관리(공연)	해당 법률상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해당 관공서에 신고된 자 예)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전력기술인 단체에 선임 신고된 자

5 제178호 : DDP대관규정 개정안

□ 제안이유

- 『DDP대관규정』제10조(대관료 구성 및 사용시간 등) 1항에 의거하여 철야시간대 대관료 책정
- 그동안 DDP 알림터 행사 대관 전·후 철야시간대 사용 시 초과시간과 상관없이 1일치 대관료 징수로 대관자 부담 가중에 따른 민원 제기
- 철야시간대 대관료를 시간별로 차등화하여 민원 부담 최소화 및 대관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『DDP대관규정』의 『<별표1> DDP 대관료』의 '1.기본시설 대관료'에 '알림터 철야시간대 대관료 적용 기준을 추가하여, 철야시간 대관료를 책정 하고자 함

• '알림터' 철야시간대(23시~08시) 대관료 적용 기준

- 1일 임대료 시간당 단가의 150%할증

※ 철야시간대 사용은 1일 대관 운영시간 사용후 연장만 가능

※ 철야시간대 사용료는 행사마감 후, 2주내 정산

※ [참고] 타시설 시간외사용료 비교표

구 분	DDP	코엑스	장충체육관	예술의 전당
목 적	디자인·패션산업	MICE 산업 선도	복합스포츠예술시설	문화복합센터 (종합 예술 시설)
분 류	유니크베뉴	전문전시시설	실내스포츠, 공공·문화예술	전문전시시설
면 적	4,539m ² (비정형구조) ※ 알림1관, 알림2관	35,287m ² (정형구조) ※ A, B, C, D HALL	7,782m ² (1~3층 관람석포함) ※주체육관, 바닥면적 1,832m ²	3,805m ² (정형구조) ※ 제1~7전시실
사 용 시 간	11시간(10시~21시)	12시간(08시~20시)	하절기(4-9월) : 11시간(8시~19시) 동절(10-다음해3월) : 9시간(9시~18시)	8시간(11시~19시)
시간외 사용료	-	30분단위로 1일임대료의 1/20부과(약120%)	토,공휴일 사용시 1일임대료의 130%가산 야간 사용시 주간사용료의 130%가산	18~22시:1일 임대료의 시간당 단가 적용 22~24시:1일 임대료의 150% 할증 ※ 24시이후 작업 금지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, 시간당 단가의 150%할증
임대료	m ² 당 6,790원 (정액개념)	m ² 당 2,009~3,102원 (요일적용)	m ² 당 229원(평일주간기준, 요율 적용) ※ 관람료 별도 징수	m ² 당 1,372원 (요일적용)
	임대료외 추가비용 없음	부가세별도, 전기, 관리비별도	부가세별도, 부속시설사용료 별도, 중계사용료별도 ※관람료 수입의 8%(공공문화행사), 15%(일반행사)사용료 징수	부가세별도, 항온항습설비사용료별도, 수장고 비용별도, 부대설비, 관리비 별도
	공공할인적용 (50%)	할인 없음	할인 없음	할인 없음
			※철야시간대 사용료는 '시설관리공단' 규정을 따름	※전시준비 또는 작품철수 등을 위해 기준시간 (09:00~18:00) 외 추가로 작업이 필요한 경우, 전당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※불가피하게 오후 10시 이후 작업(자정 24:00까지)이 필요한 경우 심야작업 사유서를 제출, 전당의 승인 必.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 대관료는 8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을 기본단위로 사용시간에 따라 일일 기본시설 사용료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 후 150%로 할증 ※24시 이후 철야작업 금지 원칙

3. 행정사항

- 서울시 주무과 및 공기업담당관 사전협의 진행(완료)
 - 기 간 : 2019. 3. 8 ~ 3. 26
 - 내 용 : 상정안건 사전검토(이사회 통지 공문발송 및 자료 검토요청)

■ 이사회 소집 통지 완료

- 주요내용 : 이사회 개최 개요 및 안건자료 이메일 송부
- 통지일자 : 2019년 3월 7일, 24일

■ 이사회 결과 공유

- 의사록 공개 : 참석이사 대상으로 사전 리뷰 후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예정

4. 소요 예산
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기안금액
일반관리비	운영경비	운영경비	회의운영비	4,900,000
합 계				4,900,000

■ 예산 산출 내역 : 사백구십만원정(4,900천원)

- 이사회 참석수당 : 3,000천원

구분	내 용	산출내역	지급액(천원)
1	회의 참석수당	300,000 X 10명	3,000
계			3,000

- 속기사비 : 600천원

구분	품 목	산출내역	지급액(천원)
1	속기사비	중앙속기사 (2시간 이상)	600
계			600

- 기타 운영비 : 1,300천원

구분	품 목	산출내역	지급액(천원)
1	자료인쇄	인쇄비 1식 (22부)	200
2	회의장 운영비	다과 및 음료, 회의장 셋팅비 등	650
3	식대	30,000원 × 15명	450
계			1,300

[붙임] 1. 제57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부.

2. 안건 174호~176호 요약 발표자료 1부. 끝.